

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2846호, **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주요 변경사유로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경제실 「서울 Vision2030 펀드」 2025년 신규 출자 100억원 및 민생노동국 「소상공인 더성장 펀드」 신규 출자 7억원을 반영하고,
- 나.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결산 결과, 예치금 회수가 126억원 증가 및 사업수입·사무대행비 정산 등을 반영하였음
- 다. 이에 따라 2025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이 당초 852억원에서 1,121억원(269억원 증가)으로 증액됨

[수입계획 변경내용]

(단위 : 백만원)

장·관·항·목	당초 (A)	변경안 (B)	증감 (C=B-A)
수입합계	85,192	112,139	26,947
세외수입	6,923	10,508	3,585
사업수입(펀드회수금)	5,000	9,000	4,000
이자수입	1,902	1,505	-396
위탁비반환수입	21	2	-19
보선수입등내부거래	78,269	101,631	23,362
예치금회수	44,859	57,521	12,662
전입금	33,410	44,110	10,700

[지출계획 변경내용]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초 (A)	변경안 (B)	증감 (C=B-A)
지출합계	85,192	112,139	26,947
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	60,674	83,374	22,700
서울Vision2030펀드 및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·관리	60,674	82,674	22,000
서울Vision2030 펀드 조성	47,679	69,679	22,000
서울 미래혁신성장 펀드 조성	11,624	11,624	0
서울 벤처펀드 운영(사무대행비)	471	471	0
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조성	900	900	0
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	0	700	700
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	0	700	700
재무활동(경제실 창업정책과)	24,498	28,745	4,247
내부거래지출	15,543	15,543	0
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(원금) 상환	13,970	13,970	0
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(이자) 상환	1,573	1,573	0
보전지출(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)	8,955	13,202	4,247
예치금	8,955	13,202	4,247
행정운영경비(경제실 창업정책과)	20	20	0
기본경비(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)	20	20	0
기본경비	20	20	0

Ⅲ. 검토의견¹⁾

- **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**은 '24회 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**예치금회수**가 증가(126억 6,200만원)하였고,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전입금(107억원)을 증액하고자 수입계획을 변경(269억 4,700만원)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**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**(227억원)과 **재무활동**(예치금, 42억 4,700만원)에 반영하는 등 지출계획을 변경(269억 4,700만원)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수입계획의 경우 펀드 회수금(사업수입) 증가 등 **세외수입**을 당초(69억 2,300만원)보다 35억 8,500원을 증액하여 변경(105억 800만원)하고, '24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치금회수(126억 6,200만원) 및 전입금이 증가(107억원)하여 **보전수입등내부거래**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수입계획을 당초(851억 9,200만원)보다 269억 4,700만원 증액한 1,121억 3,900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²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,
 - 지출계획의 경우, 정책사업인 ①**중소기업육성을 위한 투자지원**에 대한 변경내역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구성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동 정책사업에 227억원을 증액하여 당초 지출계획(606억 7,400만원)보다 37.4% 증가(833억

1) ■ 검토보고서의 경우,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

■ 증감률 등의 경우,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,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($\pm 0.1\%$ 범위내) 차이 있음

2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① 생략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7,400만원)된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의회의 의결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

- 다른 정책사업인 ②**재무활동(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)**은 당초 지출계획(244억 9,800만원)보다 17.3%, 42억 4,7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(287억 4,500만원)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
○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및 전입금 등을 정책사업 지출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³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-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금을 하려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⁴⁾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고 있어 동 기금지출계획과 관련된 출자 동의안을 지난 5월 27일 시의회에 제출하여 소관 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⁵⁾,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지출계획한 출자금은 관련 동의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연동하여 증액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○ 아울러 제출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① “지출계획” 변경내용중 **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**에 조직개편 전 '24년도 기금운용부서(경제정책실

3)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5조(기금의 용도)

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창업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, 신기술사업투자조합,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
2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
4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5) ■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」

① 의안번호 : 2837, ② 제안(시장) : '25. 5.26, ③ 회부 : '25. 5.29

- 서울Vision2030 펀드 등 출자

■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출자 동의안」

① 의안번호 : 2839, ② 제안(시장) : '25. 5.26, ③ 회부 : '25. 5.29

- 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출자

경제정책과)를 기재하고, 예수금 원금 상환과 이자 상환 금액을 잘 못 기재하였으며 ② “수입계획” 변경내용에는 **위탁비 반환수입**을 누락하였다가 제출('25. 5.26.)된 안건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('25. 5.29.)한 바, 의회로부터 심사·의결받고자 제출되는 의안 작성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〈표 3-1〉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	당 초 (A)	기 운 계 변 경 안 (B)	증 감 (C = B - A)	증 감 륜 (D = C / A)
지 출 합 계		85,192	112,139	26,947	31.6
중 소 기업 육 성 을 위 한 투 자 지 원		60,674	83,374	22,700	37.4
서울Vision2030펀드 신규구성 및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·관리		60,674	82,674	22,000	36.3
서울Vision2030 펀드 조성		47,679	69,679	22,000	46.1
서울 미래혁신성장 펀드 조성		11,624	11,624	-	-
서울 벤처펀드 운영(사무대행비)		471	471	-	-
녹색기업창업펀드 제5호 조성		900	900	-	-
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		-	700	700	순증
소상공인 더성장 펀드 조성		-	700	700	순증
재 무 활 동 (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투 자 계 정)		24,498	28,745	4,247	17.3
내 부 거 래 지 출 (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투 자 계 정)		15,543	15,543	-	-
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 정 예 수 금 (원 금) 상 환		13,970	13,970	-	-
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 정 예 수 금 (이 자) 상 환		1,573	1,573	-	-
보 전 지 출 (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투 자 계 정)		8,955	13,202	4,247	47.4
예 치 금		8,955	13,202	4,247	47.4
행 정 운 영 경 비 (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 투 자 계 정)		20	20	-	-

자료근거 : ①202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중소기업육성기금(투자계정) 지출계획,
②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5. 5.26) 재구성

○ 그 외에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는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,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⁶⁾ 금번 변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사료됨

- 서울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세입·세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때 기금지출 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,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지출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
-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,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사업별 설명서를 누락한다면 사업에 대한 신설, 변경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어 변경요청된 지출계획의 적정성 검토에 한계가 있는 바,
-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경우, 변경된 지출계획에 대한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심사·의결권이 존중되도록 하고, 한정된 심사기간 동안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6) 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① 생략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① 생략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